네오플럭스와의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개인 거주자 用)

※ 본 내용은 기존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신한금융지주와 네오플럭스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신한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I.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총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가격인 1주당 32,261원과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한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3)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지분율 4%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22퍼센트
3억원 초과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27.5퍼센트)

단, 대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4) 양도소득세는 주주가 2021년 3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 시 양도가액(위 (2) 참조)의 0.4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1년 3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네오플럭스로부터 지급받는 네오플럭스 주식 1주당 가액(네오플럭스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가액은 1주당 2,881원)입니다.

(3)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지분율 4%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22퍼센트
3억원 초과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 × 27.5퍼센트)

단, 대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4) 해당 양도소득세는 주주가 2021년 3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1) 네오플럭스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위 (2) 참조)의 0.4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1년 3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II. 유의사항

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